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 (제 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위원회의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 등

- 1) 위원회 구성에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함
- 2)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29.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택시정책위원회”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5항에 따라 위

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임 또는 해촉”으로 하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택시정책위원회----- ----- ----- -----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현행 제1호와 같음)
2. 교통관련 업무에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신 설>

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u> <u>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u> <u>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u> <u>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u> <u>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u> <u>우</u> ② <u>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u> <u>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u> <u>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 <u>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u> <u>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u> <u>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u> <u>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u> <u>하지 못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u> <u>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u>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u> <u>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
<u>제2조의2(위원의 해촉)</u>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u>해촉(解囑)</u>할 수 있다. 1. ~ 4. (생략)	<u>제2조의3(위원의 해촉)</u> ----- ----- ----- ----- <u>해임 또는 해촉</u>----.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 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u>특별시·광역시·특</u> <u>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u> <u>하 “시·도”라 한다)</u>의 시·도 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 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 ----- ----- ----- <u>시·도</u>-----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7